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년월일: 1992. 1.

제출자: 속초시장

1. 제안 사유

수산물 건조인의 생업보호와 연안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함.

2. 주요 골자

- 0. 수산물공동할복장을 시설하여 사용자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토록 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 0. 부지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 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

3. 참고 사항

- 0. 속초시 공고 제 269 호 ('91. 12. 18 - '92. 1. 6)
- 0. 시정조정위원회 1차 심의 : '92. 1. 20
- 0. 시정기획조정단 심의 : '92. 1. 21 - 1. 23
- 0. 시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의 : '92. 1. 24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운영관리 조례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건조인의 생업보호와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이하 "할복장"이라한다) 이라함은 수산물 할복·세척에 필요한 시설물 (할복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창고및화장실등) 일체를 말한다.
2. 폐수처리시설이라함은 수산물의 할복·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함은 할복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
4. 관리비라함은 할복장 유지관리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5.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라함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 3 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
2. 위 치 : 속초시 청호동 1333 번지

제 2 장 운 영 관 리

제 4 조 (운영관리) ① 할복장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수탁자는 할복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위탁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1 개월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 3 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 5 조 (수탁자의 책임) ① 수탁자는 할복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할복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운영하여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할복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할복장 위탁관리 사용료) 시장은 수탁자에게 제 5 조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무상 위탁관리토록한다. 다만, 할복장 부지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8 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다.

제 7 조 (위탁관리의 최소등) ①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시장은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때
5.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때

②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 3 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 8 조 (위원회 설치) 할복장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0 조 (위원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용자의 대표가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4 조 (감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 감사는 사용자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5 조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 (관리인의 임면)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1.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관리 : 1 인 이상

2. 폐수처리시설관리인 : 2 인 이상 (폐수처리능력자 1인및 보조요원 1인을 필수 요원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청소및 관리인 : 1 인 이상

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관리비의 징수 관리

제 17 조 (관리비의 징수) ① 위원회는 할복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징수·관리하고 관련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리비의 징수관리) ①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징수관리 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19 조 (관리비의 조정) 시장은 수지분석 및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관리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지 관리 및 보수

제 20 조 (유지관리 및 보수주체) 할복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책임하에 유지관리한다.

제 21 조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부담)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관리비로 전액 부담한다.

② 위원회는 운영관리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추가 조정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2 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23 조 (서류비치)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비 징수·지출대장 및 지출증빙서류
2. 시설물 관리대장
3.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4. 회의록 및 결산보고서
5. 비품대장 등.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 보존기간은 3 년으로 한다.

제 2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